

## 5. 都市計劃施設基準에 관한 規則中改正令

건설교통부령 제124호 1997. 10. 25

###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전기시설·통신시설 및 상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공동구를 관리함에 있어서 출입구·재료반입구 및 환기구 등의 특수한 부분은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훼손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하도록 하며,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안에 경보설비·소방설비 및 비상발전설비 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 4”를 “법 제20조·법 제20조의 2 내지 제20조의 4”로 한다.

제6조제5항중 “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 4·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법 제20조·법제20조의 2 내지 제20조의 4·법 제21조 및 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의 3 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변소·공중전화·우체함”를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6,000인”을 “6천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22조중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관련 사업”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본문중 “어항법 제2조제2항”을 “어항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2조의 2중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43조중 “축소된”을 “부설된”으로 한다.

제47조 제8호 중 “6,000제곱미터”를 “6천 제곱미터”로 한다.

제51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장실

제54조의 3 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중 “근린주거지역”을 각각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및 도매센터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센터나 동법 제

2조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매센터”로 하고, 동조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4조중 “전신·전화”를 “통신”으로 한다.

제65조제1호중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하여”를 “경제적 타당성 등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로 한다.

제66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호를 제15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5조(중전의 제8호)중 “제6호”를 “제14호”로 한다.

5.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되,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구에 수용되는 단위시설의 기능

유지와 훼손 및 장애의 방지등 단위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동구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수용시설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수용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2.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경보용 열감지설비

나. 이상침수경보설비

다. 출입자감시설비

라. 가스감지기

13. 공동구안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2조의 4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로 한다.

제73조 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유류”를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로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83조 제5호 중 “변소”를 각각 “화장실”로 한다.

제85조 제1항 제10호 중 “1,000미터”를 “1천미터”로 한다.

제87조 중 “도서관진흥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89조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다.

105조중 “사방사업법 제2조제1항”을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2”로, “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

제128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로 한다.

제128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로 한다.

제128조의 2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30조 제5호 중 “변소”를 “화장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제3호나목·제5호나목·제7호다목·제8호나목중 “변소”를 각각 “화장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